

생활관 운영규정

제정 2014. 06. 25.

제3차 개정 2019. 06.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직제규정 제17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속기관인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본 기숙사는 상지대학교 생활관이라 칭한다. 남학생 생활관은 민음관·여학생 생활관은 맑음관으로 구분하고, 우리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 할 수 있다.(단, 입사 및 퇴사에 필요한 준비기간은 2일 이내로 하되 개관기간에 포함한다.)

제4조(이용) 생활관의 시설 이용은 관생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생이 아닌 외부인이나 단체에게도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이하 입사한 학생은 “관생”이라 한다.)

제5조(준칙)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준칙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직제

제6조(관장) ① 생활관에 생활관장을 두고 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생활관을 운영 및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7조(행정실) ① 생활관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생활관 관리를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사감) ① 사감은 관생들의 생활지도, 안전관리, 상담 및 입·퇴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② 사감은 남·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9조(감사) 생활관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감사는 우리대학교 감사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생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2조(위원장)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3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준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
2. 생활관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3. 관생 자치회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관리비 및 사용료 책정
5. 관생선발 기준 설정 및 우선선발에 관한 사항
6. 관생 생활관 이용 만족도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6.21)
7. 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항 변경 및 개정 2016.06.21)

제14조 2 (평가주기/활용) 관생의 생활관 이용 만족도 조사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후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연도에 반영한다. (신설 2016.06.21.)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5조(입사자격) 생활관의 입사자격은 본교 재학생 및 대학원 외국인유학생(**국제어학원** 추천에 한함.)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 하며, 원주시 지역 관내(부론면, 지정면 제외)에 연고가 없으며 통학이 어려운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9.06.25)

제16조(입사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직전학기에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정 전염성 질환자
4. 휴학중인 사람
5.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6.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람
7.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선발) ①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 선발기간 중에 소정의 신청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한다.

② 생활관장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선발한다. 다만, 선발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8조(입사등록 및 취소) ① 선발된 관생은 생활관 관리비를 납부하고 건강진단서 및 기타서류를 갖추어 지정 기일내에 입사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관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사 할 수 없다.

③ 선발된 관생중 입사 마감일로부터 이유없이 3일이 경과하여도 입사하지 않은 관생은 입사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9조(퇴사) ① 생활관장은 관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관생에 대하여 즉시 퇴사 조치하고 학부형에게 통보한다.

② 퇴사처분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 관생준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장 납입금

제20조(납입금) ① 생활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생활관 관리비를 학사일정에 따라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을 정하여 징수한다.

② 관생이 납부한 생활관 관리비는 교비에 편성하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비 : 생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③ 중간 퇴사 및 입사생의 생활관 관리비 환불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1조(경비부담) 생활관의 관리운영 및 관생 생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관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관생회

제22조(관생회) 생활관내에 관한 민주적 자치 능력을 함양하고 관생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해 관생으로 구성하는 관생회를 남·여 각각 둘 수 있다.

제23조(관생임원) ① 남·여 관생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총장 각 1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9.12)

② 임원은 학기초에 관생들이 선출하고, 임기는 생활관의 재실(2학기 종강일)시 까지로 한다.

제24조(회비) 관생은 관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게스트 룸

제25조(게스트룸) ① 교내 구성원, 외래 교수 및 외부 초청인사의 숙박편의를 위하여 생활관 내의 게스트룸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게스트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4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중전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중전 생활관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기획예산부-498, 2016.06.21)

이 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부-691, 2016.09.12)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